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37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이개호·박홍배·김영배

김현정 • 이정문 • 위성곤

박수현 · 문금주 · 정진욱

백승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대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운영되는 등 과거사 정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뿐만 아니라역사적 소용돌이에서 혼란과 갈등으로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들도 전체 신청사건의 2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들은 주로 여성과 아동, 노인들이었으며이들 주민들은 공직자 집안 또는 좌익에 비협조적이거나 우익활동, 지주 집안 등이라는 이유로 희생되었음.

아울러 개정된 법에 배상 및 보상을 위한 조항이 빠져있어 피해자들의 완전한 구제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이 3년에 불과해 진상규명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에 충분치 않은 상황이며

진실규명에 대한 신청을 법률 개정 시행일부터 2년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법 시행을 인지하지 못한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 알지 못한 경우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임.

또한 소멸시효 규정으로 인해 과거 국가에 의한 민간인 희생 및 다수의 인권침해를 겪어온 분들이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어렵게 새로이 출범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잘못된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정확한 진상조사 활동을 보장하고 피해자들을 충분히 구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

이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위원회의 진상조사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 또한 유해발굴단을 설치하여 유해의 조사·발굴을 진행함으로써 희생자,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피해에 대한배·보상을 가능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진실규명 신청을 상시적으로하도록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배제에 대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의3신설 등).

법률 제 호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혼란과 갈등으로 적대세력 등 민간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사망·상해·실종사건 제19조제2항 중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의2(유해발굴 및 손실보상)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진실규명과 관련된 희생자의 유해(이하 "희생자의 유해"라 한다)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유해발굴 단을 둔다.
 - ② 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토지·공유수면(公有水面) 등(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발굴할 수 있고, 조사·발굴에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농작물, 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변경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를 조사·발굴하려는 때에는 조사·발굴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

- 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타인에게 제2항의 조사・발굴에 따라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이나 타인 토지등을 일시 사용, 또는 농작물・나무 등의 장애물의 제거・변경에 따른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⑤ 누구든지 희생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위원회는 발굴된 유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유해발굴단의 설치·운영, 제2항에 따른 유해의 조사·발굴,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을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포함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 따로 법률로 정

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중 "정부는"을 "위원회는"으로,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를 "설립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2. 추도 사업 및 추모공원의 조성 · 관리
- 3. 과거사 관련 추모일 제정
- ⑤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연구재단을 원활하 게 운영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제5장에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제3호 와 제3의2호 및 제4호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제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희생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로부터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통 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생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현행
략)	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3의2. 1945년 8월 15일부터 한
	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혼란과
	갈등으로 적대세력 등 민간인
	들에 의해 이루어진 사망·상
	<u>해ㆍ실종사건</u>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 (생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②
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17392	
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	
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일을 말한다)부터 <u>2년 이내에</u>	<u>한다</u> .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23조의2(유해발굴 및 손실보상)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진실규
	명과 관련된 희생자의 유해(이
	하 "희생자의 유해"라 한다)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② 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토지·공유수면(公有水面)등(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발굴할 수 있고, 조사·발굴에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 등을 일시 사

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 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

거 · 변경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유해발굴단을 둔다.

③ 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를 조사・발굴하려는 때에는 조사 ・발굴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 자 또는 관리자와 그 밖의 이 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타인에게 제2항의 조사・발굴에 따라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이나 타인 토지등을 일시 사용, 또는 농작물・나무 등의 장애물의 제거・변경에 따른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을 준용한다. ⑤ 누구든지 희생자의 유해 또 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는 발굴된 유해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유해발굴단의 설치 · 운영, 제2항에 따른 유해 의 조사·발굴,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조사기간) ① ----------<u>3년</u>---

③ (생략)

제36조(피해 및 명예회복) ①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u>피해</u>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u><신 설></u>

② (생략)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① 정부는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 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② (생 략)
- ③ 과거사연구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 1. (생략)
- <신 설>

	③ (현행과 같음)
제	36조(피해 및 명예회복) ①
	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포함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u>조치를</u>
	② 정부는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
	따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	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①
	위원회는
	<u>설립한다</u> . <u>이 경우</u>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거사
	연구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
	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u>.</u>

1. (현행과 같음)

<u>성 • 관리</u>

2. 추도 사업 및 추모공원의 조

<u><신 설></u> 2. ~ 4. (생 략)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제45조(벌칙) ① ~ ③ (생 략)

<신 설>

3. 과거사 관련 추모일 제정4. ~ 6. (현행 제2호부터 제4 호까지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연구재단을 원 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국유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제43조의3(손해배상청구권의 소 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2조제1 항제3호와 제3의2호 및 제4호 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 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 에 대하여는 「민법」제166조 제1항 및 제766조제2항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45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희생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 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